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 ▶ 일시 : 2013년 5월 24일(금) 오전 10시~13시
- ▶ 장소 : 엘타워 엘하우스(8층, 양재역 9번출구)
- ▶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 부 일 정

사회: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등 록	09:30~10:00	접 수 및 등 록
개회식	10:00~10:10	▣ 개회사 ▶ 이재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환영사 ▶ 황홍규(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주제발표	10:10~10:30	▣ 대안교육 의의, 실태 및 발전방안 ▶ 발표: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수)
	10:30~10:50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공공성 확보 방안 ▶ 발표: 염병훈(아름다운학교 교장)
종합토론	10:50~11:30	▶ 오승근(명지전문대학 교수) ▶ 황준성(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조상주(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 김희옥(하자작업장학교 교장) ▶ 이종태(곡성 한울고등학교 교장) ▶ 신순갑(스스로넷 교장)
	11:30~11:50	청중과의 토론
폐 회	11:50~12:00	교육부 관계자 논평 및 폐회사
오 찬	12:00~13:00	점심 식사 (도시락)

목 차

발 표 1

- 대안교육의 의의, 실태 및 발전방안 1
김 성 기 (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2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공공성 확보 방안 23
염 병 훈 (아름다운학교 교장)

토 론 문

-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35
오 승 근 (명지전문대학 교수)
황 준 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조 상 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김 희 옥 (하자작업장학교 교장)
이 종 태 (곡성 한울고등학교 교장)
신 순 갑 (스스로넷 교장)

발표 1



대안교육의 의의, 실태 및 발전방안

김 성 기

(협성대학교 교수)

대안교육의 의의, 실태 및 발전방안

대안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인가를 하면서 대안교육이 제도화된 지 벌써 20여년이 넘었다. 성년이다. 많은 방황이 있었다. 법정 대안학교까지 생겨 운영되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법적으로는 대안학교라 부를 수도 없다. 혼란스럽다. 대안교육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할지 살펴보겠다.

1. 대안교육, 왜 필요한가?

대안교육이 기존의 모든 교육형태를 부정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안교육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안교육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에서의 전통적 교육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대안적 형태의 교육일 뿐이다. 그러한 대안교육이 민간영역은 물론이고 공적 영역에서조차도 계속 확대되어 왔다. 분명 모종의 성과를 낳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교육이 의미있는 교육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대안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은 사실 ‘대안교육이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 대안교육이 의미있다는 것은 사실 대안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공교육에서의 전통적 교육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일반학교도, 대안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매년 4만명 이상의 학업중단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들도 있지만 가사, 질병, 부적응, 품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자도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해 대안교육과 같은 재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에 사회적 부담¹⁾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는

1)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생애소득 증가분은 8,142만원 수준으로 나

그들도 행복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에게 적절한 대안교육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표 1 2011학년도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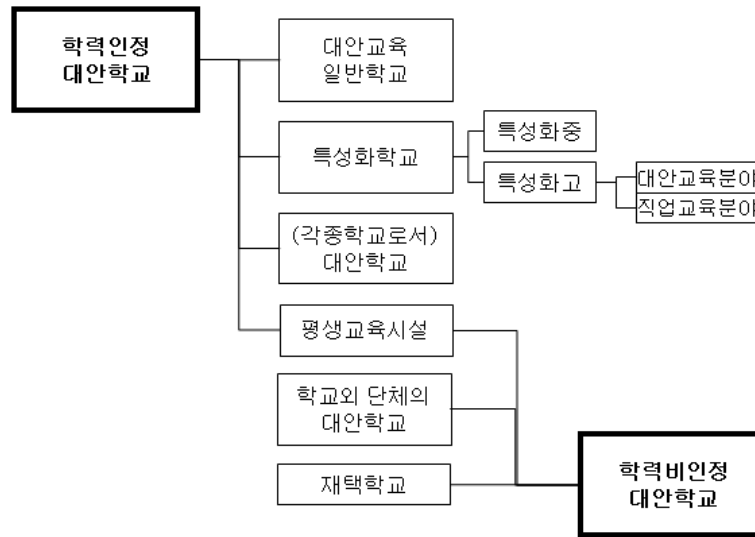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재적생(a)	2,951,995	1,849,094	1,920,087	6,721,176
신규중단자(b)	19,163	17,811	37,391	74,365
재입/편입/복학(c)	15,160	9,221	6,565	30,946
미복학중단자(d=b-c)	4,003	8,590	30,826	43,419
d/a x 100	0.14%	0.46%	1.61%	0.6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2).

2. 대안교육의 형태와 학교현황

통칭으로서의 대안학교는 제도적 규제와 학력인정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사실상 제도적 규제는 학력인정여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즉 학력인정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교원인사, 장학 등 제도적 규제가 따른다. 공식적으로 학업중단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학생이 ‘학력인정학교’를 다니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물론 비인가대안학교에서도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이 있지만 이들은 정규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상태로서 학업중단자로 분류되고 있다. 학력인정여부를 기준으로 대안학교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타났고, 학업중단자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학업중단자 1명이 소득감소로 인해 624만원의 생애 근로 소득세를 감소시키고, 범죄 증가로 인해 645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와 CART분석을 통하여 향후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판별된 123,156명이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다면 이로 인해 학생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손실 비용은 약 11조 5,9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최상근 등, 2010:260).



[그림 1] 학력인정 여부에 따른 대안학교의 유형

1) 특성화학교

정규학교이면서 대안학교로 불러왔던 학교들이 바로 특성화학교이다. 2011학년도부터는 기존 직업계통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개칭되어 포함되었다. 여기서는 종전의 대안교육분야의 특성화학교를 제시한다.

표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13.3.1. 기준)

지역	학교명	설립목적 및 특성화 방안	학생 정원	학급 (개)	지정 년도	설립별 (법인)	소재지
경기	현산중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 학업기회 부여	120	6	'03	전인	용인시
	한겨레중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안정적 정착	60	3	'06	전인	안성시
	이우중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교육	180	9	'03	이우	성남시
	두레자연중	전인교육, 인성교육, 체험 위주 교육	60	3	'03	수곡두레	화성시
	중앙기독중	장애·일반학생 대상, 체험위주 공동체·통합교육	252	9	'06	중앙	수원시
강원	팔월중	기독교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중심	41	3	'11	이화	홍천군
전북	지평선중	전인교육	120	6	'03	원진	김제시
	전북동화중	학교부적응 학생 체험위주 교육	120	2	'09	공립	정읍시

지역	학교명	설립목적 및 특성화 방안	학생 정원	학급 (개)	지정 년도	설립별 (법인)	소재지
전남	용정중	학교부적응·중도포기 학생 재교육	112	6	'03	보성학교	보성군
	성지송학중	인성 교육	80	4	'02	영산성지	영광군
	청람중	인성교육, 진로교육	37	3	'13	공립	강진군
중학교 11 개교							
부산	지구촌고	중등교육, 기초적 전문교육, 대안교육	90	3	'02	복음	연제구
대구	달구벌고	지혜로운 인재양성, 더불어사는 민주시민육성	120	6	'03	덕성	동구
인천	산마을고	전인교육	60	3	'00	산마을	강화군
광주	동명고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교육	180	9	'99	동명	광산구
경기	두레자연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함양	120	6	'99	수곡두레	화성시
	경기대명고	인성교육, 노작교육, 체험중심	120	6	'02	공립	수원시
	이우고	함께 사는 삶의 실천인 육성	240	12	'03	이우	성남시
	한겨레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안정적 정착	120	6	'06	전인	안성시
강원	전인고	인성교육, 전인 지도자 양성	100	5	'05	전인	춘천시
	팔렬고	인성교육 중심	60	3	'06	이화	홍천군
충북	양업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교육	120	6	'98	청주카톨릭 릭	청원군
충남	한마음고	인성교육과 학교 적응력 신장, 생태체험활동	120	6	'03	한마음 교육문화 재단	천안시
	공동체비전고	공동체적 전인 교육	120	6	'03	선천	서천군
전북	세인고	전인교육	180	9	'99	DIA세인	완주군
	푸른꿈고	생태학적 교육	120	6	'99	푸른꿈	무주군
	지평선고	인문학 중심 교육	40	2	'09	원진	김제시
전남	영산성지고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	120	6	'98	영산성지	영광군
	한빛고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	225	9	'98	거이	담양군
	한울고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	120	6(1)	'12	공립	곡성군
경북	경주화랑고	인성·정보·전인교육, 노작학습	120	6	'98	삼동	경주시
경남	간디학교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120	6	'98	녹색	산청군
	원경고	심성·공동체·체험 교육	120	6	'98	원명	합천군
	지리산고	전인교육	60	3	'04	학림	산청군
	태봉고	자유롭고 유연한 교육	45	3	'10	공립	마산시
고등학교 24개교							

2)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가 법정화되었다.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표 3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현황(2013.3.1.)**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법인	설립연도	소재지
서울(4)	서울실용음악학교(고)	사립	'09	중구 신당5동
	여명학교(고)	사립	'10	중구 남산동
	지구촌학교(초)	사립	'12	구로구 오류2동
	서울다솜학교(고)	공립	'12	중구 흥인동
인천(3)	대안학교 청(고)	사립	'11	연수구 동춘동
	인천해밀학교(중·고 통합)	공립	'12	남동구 구월동
	인천한누리학교(초·중·고 통합)	공립	'13	남동 논현동
대전(2)	그라시아스음악학교(고)	사립	'12	서구 도마1동
	요재미학교(초)	사립	'13	유성 구암동
경기(4)	은혜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용인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11	경기 연천군
	쉐마기독교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양주시
	TLBU글로벌학교(초·중통합)	사립	'08	경기 고양시
충북(2)	글로벌선진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충북 음성군
	한국폴리텍다솜학교(고)	사립	'12	충북 제천시
충남(1)	여해학교(중)	공립	'13	충남 아산시
경북(1)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북 포항시
7개 시도, 17교(공4,사13)				

최근 이러한 법정 대안학교 인가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인 대안학교 설립취지와 다르게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기 어려워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으려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 등록금 현황을 보면 자율형 사립고나 대학에 버금가는 수준을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의 학업중단청소년이 다니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외고나 자사고에 적용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일정 비율 받아야 하는 제한도 없다. 방목형 사립고라 할 수 있다.

표 4 대안학교 연간 수업료 및 입학금 현황

(단위:천원)

학교명	쉐마기독교학교	TLBU글로벌	한동글로벌
입학금	2,000	600	1,000
수업료(1학기)	2,100	3,235	4,100

3) 평생교육시설로서의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시설 중에는 학력인정시설과 학력미인정시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 중에서 중등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들 몇 곳이 대안학교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몇몇 시설의 경우에 횡령이나 학력위조 등의 비리로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표 5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2011.12.30)

시도	학 교 명
서울(16)	경일중·경영정보고등학교, 서현초등학교, 성지중·고등학교, 수도중학교, 신동신중·정보산업고등학교, 양원초등학교, 연희미용고등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정암미용고등학교, 정화미용고등학교, 진형중·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청암중·고등학교, 한국예술고등학교, 한림초·중·실업고등학교
부산(7)	국제금융고등학교, 부경보건고등학교, 부산경호고등학교, 부산골프고등학교, 부산미용고등학교, 부산조리고등학교, 예원정보여고등학교
대구(2)	경신정보과학등학교,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
인천(3)	남인천중·고등학교, 북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예화여중·고등학교
광주(2)	광주대신고등학교, 광주진명중학교
대전(1)	대전예지중·고등학교
경기(11)	경기미용고등학교, 계명고등학교, 고양실업고등학교, 부천실업고등학교, 안산정보산업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진영중학교, 진영초등학교, 현대예능고등학교,
강원(1)	한국YMCA원주중·고등학교
충북(1)	예일미용고등학교
전북(7)	군산평화중·고등학교, 금암고등학교, 남일초·중·고등학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미래초·중·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진북고등학교

시도	학 교 명
전남(2)	거광중 · 고등학교, 목포제일정보중 · 고등학교
경북(1)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경남(3)	경남미용고등학교, 경남복지고등학교,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4) 학교외 단체의 대안학교

(1) 공립시설내 대안학교

각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등 공립시설의 일정공간에서 ‘대안학교’ 사업을 펼치는 형태로서 도시속작은 학교(서대문청소년수련관), 난나공연예술학교(강북청소년수련관), 수서디딤돌학교(수서청소년수련관), 스스로넷미디어스쿨(서울특별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이하 ‘스스로넷’), 하자작업장학교(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들레사랑방(서울청소년수련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대개 시설 · 재정 등의 교육여건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학력인정은 되지 않고 있다.

(2) 민간단체의 대안학교

여러 민간단체에서 사업의 일환으로서 대안교육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평생교육시설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 최근에는 탈북청소년민간교육시설로 분류된 대안학교들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이 없다면 운영상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부분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

표 6 **민간단체의 대안학교(서울 제외)**

지역	연번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부산	1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	2001	(사)우다다청소년재단
	2	아시아공동체학교	초	2006	(사)아시아공동체
	3	사과나무학교	초	2008	사과나무학교공동체

지역	연번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대구	1	가온학교	—	2006	대구청소년대안교육원
인천	1	마리학교	중	2003	사)밝은 마을
	2	열음학교	초	2005	열음학교
	3	청학교	—	2009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4	하늘샘학교	—	2009	하늘샘청소년교육사업단
광주	1	광주 링컨 하우스 스쿨	—	2006	(사)국제청소년연합광주지부
	2	교육공간 오름	—	2009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3	나잘난 학교	—	2006	광주흥사단
	4	도시속 참사람학교	—	2001	(사)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5	새날 학교	—	2007	(사)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대전	1	풀잎공동체	—	2004	개인
	2	창조	—	2009	개인
울산	1	영남전인학교	—	2005	영남전인학교
경기	1	고양자유학교	—	2002	고양교육공동체
	2	과천맑은샘학교	초	2005	맑은샘교육모임
	3	과천자유학교	초중	2002	과천자유학교
	4	광명YMCA법씨학교	초중	2000	광명YMCA
	5	광성드림학교	초중	2006	거룩한 빛
	6	구름산학교	—	2005	학부모교육공동체
	7	꿈틀자유학교	초	2003	꿈틀자유학교
	8	대안교육센타 시소학교	중고통합	2005	(사)청소년문화공동체심대지기
	9	더불어가는배움터길	—	2006	더불어가는길
	10	데오스중고등학교	—	2007	드림교회
	11	두레학교	초중	2005	두레교회
	12	들꽃피는학교	중고통합	1997	(사)들꽃청소년세상
	13	디딤돌학교	중고	2001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14	무지개학교	—	2003	무지개교육마을
	15	산어린이학교	초	2001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16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초	2005	칠보산자유공동체
	17	쉐마기독교학교	중고	2006	쉐마기독교학교
	18	아힘나평화학교	—	2005	아힘나운동본부
	19	안양YMCA버리학교	—	2002	안양YMCA
	19	의왕온뜻학교	—	2005	조합형설립학교
	20	청소년대안학교무한도전	—	2008	부천시민연합
	21	큰나무학교	초	2006	큰나무교육

지역	연번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22	파주자유학교청미래과정	중고	2006	뿌리모임(학부모교육공동체)
	23	파주자유학교 초등과정	초	2006	뿌리모임(학부모교육공동체)
	24	푸른숲학교	초중고통합	2003	학부모교육공동체
	25	하나인학교	-	2006	하나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육공동체)
	26	하남꽃피는학교	유초	2003	(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27	하늘씨앗살이학교	중	2009	재단법인 한국예수회
강원	1	전인새싹학교	-	2002	전인교육연구소
	2	전인자람학교	-	2005	전인교육연구소
	3	참꽃작은학교	중	2005	사단법인 생명교육연구소
	4	링컨하우스 원주스쿨	고	2007	국제청소년 연합
충북	1	제천 꽃피는학교	중	2006	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2	새날학교	-	2008	충북다문화지원센터
	3	제천 간디학교	-	1997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4	학교너머	초중통합	2005	사단법인 간디공동체
	5	다다 예술학교	통합	2009	한국예술통합교육원
충남	1	대전 꽃피는학교	유초	2004	(사)청소년 평화꽃 네트워크
	2	금산 간디학교	중고	2002	숲속마을작은학교
	3	햇살나무학교	초중	2008	햇살나무 치료교육연구소
전북	1	실상사 작은학교	중	1999	
	2	돌나라 한농예능학교	-	1995	(사)한농북구회
	3	곰나제 사랑학교	고등	2003	
	4	1318해피존 행복스케치	중고	2007	1318 해피존 행복스케치
전남	1	순천YMCA 평화학교	5	2003	단체
	2	늦봄문익환	중고통합	2006	법인
	3	꿈꾸는요셉	-	2007	단체
	4	예뜨랑 아카데미	중고통합	2004	단체
	5	빛고을학교	초중	2006	개인
	6	곡성평화	중	2006	개인
경북	1	해보라학교	중	2009	해보라
	2	경산대안교육센터	-	1991	경산대안 교육센터
경남	1	간디어린이학교	초	2009	간디어린이학교
	2	경남범숙의집	-	2001	경남범숙의집
	3	로템의집	-	2003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4	민들레학교	-	2006	민들레공동체

지역	연번	시설명	급별	설립	설립
	5	밀양영화학교	고	2005	(재)밀양영화촌
	6	산청간디중학교	-	2005	숲속마을 청소년학교
	7	양산꽃피는학교	유초	2007	(사)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8	창원평생교육원(예술학교)	-	2009	(사)나눔복지재단
	9	하라단기청소년센터	-	2001	(사)하라
	10	해밀스쿨	중고	2005	(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제주	1	문화교육들살이	초중	2002	사립
계	94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연계·지원하고 있는 대안교육현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서울시의 학교밖대안교육 현황(2012.11.13.)**

현 장 명		운영주체	교육과정	정원	주 요 내 용
청 소 년 수 련 시 설 현 장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청소년미디어센터)	(재)청소년 폭력예방재단	3년6학기 정시모집	20명	- 미디어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사회 기여 - 자신의 적성 개발을 통한 진로 교육
	하자작업장학교 (청소년직업 체험센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3년6학기 정시모집	30명	- 생활디자인, 영상디자인, 대중음악작업, 웹작업 등 의 전공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젝트, 글로벌 네 트워크 프로젝트 등
	구립 대안학교 한들 (송파청소년수련관)	대한예수교 장로회 잠실교회	2년4학기 정시모집	20명	- 자기탐색(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특기 및 능력 발견) - 관계탐색(사회적응을 위한 기초능력배양) - 진로탐색(자신의 진로적성이해, 체험을 통한 진로 결정) - 진로체험(인턴십을 통한 직업체험, 진학위한 개별 학습)
	도시속작은학교 『열 음』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사)한국 청소년재단	2년4학기 수시모집	20명	- 검정고시, 마음성장교과, 인문사회교과 등의 교과 학습, 인턴십, 봉사학습 - 학생 생활관 별도 운영 (학습공간과 생활공간분리)
2012 신규 현장	비전학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학교법인 명지대학교	1년2학기 수시모집	10명	- 기초학력을 위한 다지기 수업 - 문화체험학습, 대학생 멘토링교육, 농촌봉사활동 등
	고드림 여행학교 (종량청소년수련관)	(사)청소년연맹	1년2학기 수시모집	12명	- 심리상담, 사회적 감수성 프로그램, 자기개발 활동 (밴드, 스퀘시, 언어) - 기초학습 및 검정고시
	통 通 桶 (성동청소년문화의집)	YWCA	1년단위 수시모집	15명	- '통' 예비학교, 검정고시 학습, 문화체험, 어른이 축제 - 건강, 나눔 걷기대회, 진로탐방여행

현 장 명		운영주체	교육과정	정원	주 요 내 용
	스쿨 제프	교육공동체 제프	1년2학기 수시모집	15명	- 정규과정: 교과학습, 공동체학습, 프로젝트 수업 - 프로젝트반: 인테리어 실습, 타로상담, 법과 생활 - 게임제작: 카드 및 보드게임 제작
	단재학교	단재학교	5년2학기 1년길찾기	20명	- 희망자교과학습:맞춤학습(국어,영어,수학) - 출판수업,여행학습 - 중앙아시아청소년교류(카자흐스탄 언어교육, 청소년문화캠프)
	돈보스코 영상대안학교	돈보스코 정보문화센터	1년2학기 수시모집	20명	- 기숙현대안학교/영상특성화대안교육(방송영상교육 전문교육 및 실습) - 기초교육과목(국어,영어,수학,사회,역사,윤리 등) 인성교육 및 생활교육
	로드스콜라	트래블러스맵	2년4학기 1년인턴십	30명	- 여행학교, 글읽기와 글쓰기, 문화작업훈련, 지역전문가훈련 - 철학과 인문학, 외국어배우기(영어,스페인어), 국내 외여행프로젝트
	티움터학교	망우청소년 수련관	고등과정	10명	- 꿈터교육과정:흥미와 적성탐색, 취업노하우, 기술 습득 기회부여 - 사랑터교육과정:일상 속 작은 사랑 나누기 실천 - 배움터교육과정,꿈터교육과정:치유프로그램
	영세프스쿨	오가니제이션 요리		10명	- 1년트레이닝:현장실습,요리교육,기본소양교육,체험 학습,자치활동, 기타 - 시존학교:1~3개월 단기교육과정, 공동체기반의 농부체험 - 인턴십:현장에 투입되는 실전에서 배우는 과정, 창업학교: 청년레스토랑 창업
	우리들학교	우리들학교	2년4학기 수시모집	20명	-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개별학습지도, 지역자원봉사활동 - 사회적응프로그램:공공기관 방문, 문화활동 참여
	로봇상상학교	창동청소년 수련관	중고통합	10명	- 과학(로봇):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교수진의 지식기부 - 교과수업(국어,영어,수학,사회,독서,작문) - 음악, 체육활동, 자원봉사활동, 체험활동, 자치회의
	희망의 우리학교	희망의 우리학교	2년4학기 정시모집	20명	- 필수교양:인문학, 글쓰기, 서토론, 외국어, 공동체 배움 - 1인1강:학생이 강좌를 개설, 직접 강의, 프로젝트: 인문학,미디어,창업 - 배움코스:학생 스스로의 자기 주도적 배움코스, 체험학습:문화예술,여행체험
민간 현장	은평씨앗학교	청소년대안공간 돌 움(비)	2년4학기 수시모집	20명	- 지적(역사의식, 사회의식, 정보처리능력)능력, 기능적(의·식·주·예·공 관련 기능)능력, 인격적 능력, 신체적 능력 등의 전인적 능력 기르기 - 검정고시, 마음성장교과, 인문사회교과 등의 교과 학습

현 장 명	운영주체	교육과정	정원	주 요 내 용
꿈꾸는 아이들의학교	(사)청소년의꿈	2년4학기 수시모집	50명	- 검정고시, 교과학습, 봉사학습, 협동학습, 공동학습 등의 체험학습 -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적응, 기초학습과정외 - 인턴십,현장, 직업, 기술교육 및 진로찾기외
아름다운학교	(사)청소년 교육공동체 함께시작	2년4학기 수시모집	20명	- 마음성장교과 - 참여자치교과 - 사회체험교과(진로 및 적성검사, 인턴십외) - 인문교양교과 (기초경제상식, 과학상식외), 프로젝 트수업
성장학교 “별”	(사)청소년과 가족의좋은 친구들	중고통합	50명	- 상담활동, 체험학습, 협동학습, 영성학습, 봉사학 습, 실용학습 - 문화학습
꿈틀학교	(사)청소년 내길찾기	2년4학기 수시모집	25명	- 기초학습 및 사회현상이해, 야외활동, 자원봉사, 농촌체험, 테마여행 - 감성교과(개별/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감성치유, 또래/집단상담 캠프) - 진로교과(진로적성검사, 직업특강, 현장체험, 인턴 십, 팀/개인프로젝트)
공간 민들레	대안교육공간 민들레 사랑방(비)	1년 단위 수시모집	50명	-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민들레사랑방의 일상적 교육문화사업 - 만남과 쉼을 통한 일상적인 배움 - 자유, 다름의 존중의 가치가 보장된 일상적 문화 만들기 - 사회로의 관심을 유발하는 체험활동을 통한 배움 (자치회의/달모임/탐방활동) - 관심사로부터 출발하여 배움으로 연계하는 소모임 활동 및 프로젝트
성미산학교	성미산 청소년 교육활동 연구회(비)	초중고 통합12년	170명	- 성미산학교는 마포지역 공동체가 발의해서 만드는 마을학교로서 대안적 - 통합교육과정-프로젝트수업/체험학습/자기주도적 학습 운영 - 교육과정(나와관계맺기/세상과 관계맺기/표현하기/ 학교문화만들기) 말과글, 수와셈, 농사체험, 여행학교, 마을잔치, 표 현예술활동
사랑·사람나눔학교	(재)청소년 사람사랑나눔	1년2학기 정시모집	60명	- 발달장애 청소년 공동체 교육청 학력인정 위탁형 대안학교 정식인가 -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공부방 사람사랑나눔교실 운영 (신길2동 소재) - 개별인지교육/심리치료/소집단사회적응/여가동아리 활동/직업체험학교 운영
셋넷학교	탈북청소년 교육공동체 (비)	1년3학기	25명	- 적성과 소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면서 자기다움을 찾아간다. - 기본학습: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철학 - 상담및 예술체험, 민주문화공동체훈련, 공동체몸만 들기, 현장체험활동 등.

현 장 명	운영주체	교육과정	정원	주 요 내 용
하늘꿈학교	(사)좋은씨앗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1년 과정 (초/중/고 2년) 기숙형	60명	- 특성화수업: 중국어, 영어회화, 취미활동, 자격증반(컴퓨터, 한문) - 사회적응프로그램: 대학생연계지역탐방, 홈스테이, 문화체험(건축, 문화탐방등) - 진로 및 생활상담
꿈터학교	꿈터청소년 대안공동체 (비)	2년 과정 기숙형	15명	- 교과활동분야: 교육활동(국어, 영어 외), 특별활동(제과제빵, 진로체험, 레크댄스) - 대안문화분야: 백두대간등정, 생태체험활동, 테마여행 - 전통문화분야: 민화그리기, 전통예술활동
링컨학교	(사)국제 청소년연합	고등과정 위탁형	40명	- 서울시교육청 학력인정 위탁형대안학교 2개학급 운영 - 대안학교 교과별 협의회(영어, 수학, 국어, 음악등) - 인턴십 도입을 통한 구체적 진로탐색, 글로벌캠프, 영어캠프 활성화 등
사랑의학교	(사)한빛청소년 대안센터	중고등 통학/ 기숙형	25명	- 기숙형(자립터) 대안가정 운영 - 길거리상담 가정방문 상담활동 등 - 학교사회사업(학교방문 상담사업/연계진로탐색) - 지역사회조직사업(일대일결연사업 등)/ 대안교육문화사업(검정고시/동아리) 등
합계			892명	

출처: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12)

표 8 **탈북청소년민간교육시설 현황(2012.4.23)**

유형	지역	시설명
민간 교육 시설 (10)	서울	여명학교, 우리들학교, 하늘꿈학교, 한민족학교, 늘푸른학교, 남북어울림학교
	경기	한울학교, 한꿈학교, 한민족캠내트학교
	충남	드림학교
방과후교육 기관 (10)	서울	가양7사회복지관, 거레얼지역아동센터, 공릉사회복지관, 성통만사, 자유터학교, 한누리학교, 한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북	전북하나센터
	제주	아라사회복지관
그룹홈 (7)	서울	가족, 꿈사리공동체, 두리하나, 복자여명의 집, 영원한 도움의 집, 한우리공동체
	경기	우리집

3. 대안학교 위탁교육제도

2003년부터 시·도별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시키는 제도(이하 ‘대안학교위탁교육제도’라 함)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교육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감이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교장이 위탁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해당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모든 위탁교육기관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어 확신하기 곤란하다. 지금까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 바 없다.

학업중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학교 위탁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위탁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아 새롭게 학업을 재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적교의 입장에서도 교사들이 해당학생들로 인한 생활지도상의 심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학급운영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의미있는 제도이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8년에 16,723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중단하였지만 위탁교육기관은 19개 기관뿐으로 577명밖에 수용하지 못하였다. 전국적으로는 148개 기관에서 18,458명이 위탁되어 있다.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중등학교에서 매년 54,125명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6개학년 통틀어 324,750명의 중단자 중 6%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교원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표 9 장기 위탁교육기관

지역	시설명	시설형태	학교급	학생수
서울	나란타대안학교	복지	중	15
	나래대안학교(예란원)	복지	중/고	
	다애다문화학교		중	
	도담학교(한부모가족지원센터, 캥거루스쿨)		중/고	
	도시속작은학교	수련	고	12

지역	시설명	시설형태	학교급	학생수
	링컨학교	민간	고	40
	미래학교(한산중)	공립	중	18
	사람사랑나눔학교	민간	중/고	21, 19
	서울방송예술종합학교	민간	고	20
	서울사진영상학교(서울기술인력개발원)		고	
	서울산업정보학교(꿈타래)	공립	고	32
	성지대안고등학교	평생	고	69
	세포학교	민간	중	18
	신도림미용고등학교		고	80
	썬별나우리학교	상담	중	48
	아란야대안학교	복지	중	12
	아우름학교	복지	중	9
	이루다학교	복지	중	12
	청소년희망학교(청소년희망재단)			
	티움터학교	수련		
	한림대안고등학교	평생	고	49
	현대문화예술학교	민간	고	18
	AN College			
부산	부산자유학교	민간	고	74
	양정중학교	민간	중	80
	신영중 · 고등학교	민간	중/고	45
	경남복지고등학교	민간	고	
대구	경신정보과학고	평생	고	30
인천	아름다운학교			
	하늘샘학교	민간		
광주	사)광주청소년교육원용연학교	민간	중	61/80
대전	대전청소년쉼터	보호	중/고	18
	대전은석학교	민간	중/고	55
울산	울산시민중 · 고등학교	민간	중/고	49
경기	헌산마을중학교(헌산중학교 내)	사립	중	20
	한울학교(대명고등학교 내)	공립	고	15
	꿈비학교(광명시청소년종합지원실 내)	공립	중	
	무지개드림학교(원당종합사회복지관 내)	복지	중	15
	푸른꿈보금자리학교(푸른꿈청소년상담원 내)	상담	중/고	
	고운뜰(홀트아동복지회 내)	복지	중고	4

지역	시설명	시설형태	학교급	학생수
	에스더의 집(동방사회복지회 내)	복지	중고	
	수원제일평생학교	평생	중	
	성남유니크민들레학교	민간	고	
	여주민들레학교	민간	중	
강원	팔려중학교	사립	중	27
충남	천안대안학교	민간	중/고	103
	국학원	민간	고	9
전북	희망샘학교	복지	중/고	33
	산돌학교	민간	초/중/고	23
	꿈누리교실	공립	중/고	28
	전주대안학교	민간	중/고	21
전남	청소년좋은세상	민간	중/고	111
	푸른동산	복지	중/고	82
경북	안동나섬학교	대학	고	17
	구미상록학교	평생	중/고	34
	상주희망야학	민간	고	1
	김천늘푸른학교	민간	고	0
	영천산자연학교	민간	초/중	0
	포항청소년자유학교	민간	중/고	9
경남	범숙학교	복지	중	10
	신영중학교	복지	중	10
	경남미용고등학교	평생	고	6
	경남복지고등학교	평생	고	6
	지리산가랑잎학교	민간	고	3
계	60개			1,428

표 10 학생특별교육이수(단기위탁)기관 지정 현황(경기도교육청)

기관명	교육기간	교육 가능인원	지도 강사수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5,10일	1~10명	17명
광명시청소년종합지원실	5일	5~10명	10명
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	5일	13명	9명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5일	5명	6명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5일	8명	6명

기관명	교육기간	교육 가능인원	지도 강사수
매화종합사회복지관	5일	5명	5명
민들레자원복지실천학교	3,5,7일	20명	23명
성남시새날청소년쉼터	5일	10명	7명
수원내일여성센터	5일	10~15명	13명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3,5일	20명	12명
이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7일	10명	6명
인성지도교육원	5일	10~15명	7명
푸른꿈청소년상담원	3,5,10, 15일	5~20명	18명
한라종합사회복지관	5일	6~7명	9명
일산종합사회복지관	5일	6명	12명
두레가정폭력상담소	5일	5~8명	6명
원당사회복지관	5일	6명	8명
현돌종합사회복지관	5, 10일	3~6명	10명
문촌7사회복지관	5,10,15일	4~10명	6명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5일	8~12명	11명
가평수덕원	5일	40명	15명

4. 대안교육의 발전방향

1) 대안학교 법제 정비: 법정 대안학교 폐지 및 특성화학교로 인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한 법정 대안학교 중에는 통상적으로 불려왔던 ‘대안학교’라기보다는 ‘귀족형 국제학교’에 가까운 학교들이 있다. 일반 사립고 인가의 불편한 길을 피해 편법적으로 학교인가를 받기 위해 ‘대안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는 외국에서 1년간 체류한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학교로서 대안학교 인가를 신청한 법인도 있다. 불법 조기유학생들을 합법적으로 입학시키기 위해 대안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 1년간 체류해서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이것은 외국 체류 3년 조건을 충족시켜야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규정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법정 용어는 일반사회에서의 통념과 그에 따른 말뜻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정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그에 따른 말뜻에 어울리지 않는다. 현행 법령상으로 보면 특성화중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라 하는 것이 적절하며, 초·중등이 통합된 학교들이 있으므로 ‘특성화학교’라고 새로 분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안학교’는 법정용어로 쓰지 말고 사회에서의 비인가대안교육 시설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환원시켜야 한다.

2012년에 김춘진 국회의원과 김세연 국회의원이 대안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만약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법정 대안학교에 관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고 그 대상학교들은 특성화학교로 다시 인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2) 장기대안교육위탁기관 확대 지정

흡연 3회 적발시 퇴학시키는 학교들이 있다. 한 학기가 지나고나서 한 학년 8개반 중에서 한 반이 사라진 학교도 있다.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무자비가 학생들을 학교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자퇴나 징계에 의한 퇴학에 앞서 학업중단숙려제도를 통해 이러한 무분별한 퇴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숙려제도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위탁기관 지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법인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대안교육 이력이 있는 민간단체들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는 현재 초등에서도 위탁교육 수요가 많은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중등학교로만 한정하고 있다. 초등교육위탁기관도 지정해야 한다.

3) 위탁교육기관의 인건비 등 안정적 재정 지원

앞서 개정 법률안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탁기관의 상근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서는 위탁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위탁생 15명당 1명의 상근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불안정한 사업비 재원이 아니라 교부금 등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프로그램 심사 등을 통해 지원액을 정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공식에 의해 재정을 지원하고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거나 사후에 평가에 반영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 내용 심사에 의해 지원여부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정부 입맛에 맞게 유도하는 폐단을 낳게 된다.

4) 체계적인 학업중단 현황 분석

대안교육의 가장 기본적 수요자는 학업중단자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는 학생변동 상황이라는 항목으로 학업중단현황이 제시되어 있고, 2010년부터 나이스에서도 학업중단 세부사유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중 몇 명이 복교를 했는지, 재중단과 재복교율은 어떤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학업중단 사유발생시점으로부터 아이핀과 같이 고유아이디를 생성시켜 입력을 한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최초 중단후의 행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대안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 Q&A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안내
- 김성기(2004).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1(1),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기, 안병천(2011). 탈북청소년 위탁교육 시행 및 관리 방안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김성기(2013). “공립 대안교육기관(학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2012 전국 대안교육 컨퍼런스’ 토론문
- 김성기, 성열관, 하봉운, 황준성(2012). 강원도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연구.
강원도교육청
- 김성기(2011). ‘탈북청소년 위탁교육 시행 및 관리 방안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
육지원센터.
- 김성기·조동섭·전제상(2009).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분석’. 부산광역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012).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네트워크학교 현황.
- 최상근, 양수경, 남기곤(2010).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연보』.

발표 2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염 병 훈

(아름다운학교 교장)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 방안

1. 주장의 배경

대안학교 법제화 논의는 지난 십 수 년 간 지속되어 왔고 이제 그간의 실패와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한 법안의 형태로 그 모습을 선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제도 밖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거부하기 어려운 흐름일 것이다. 그러나 대안교육에 대한 법제화가 시행되어 기존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이것을 단순히 학력 인정이나 재정지원 차원의 성과로만 치부할 경우 자칫 이제껏 지켜왔던 대안교육의 공공적 성격이 훼손되거나, 대안교육이 커다란 제도 교육 속의 색다른 또 하나의 교육 형태 정도로만 인식되어 그 가치가 축소될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법제화 논의의 성과들을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대 사회적으로 그 공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몇 가지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사실 법제화를 통한 공공성 획득의 논의는 하도 많이 이루어져 이러한 관점의 논제는 계속되는 동어반복에 불과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러한 글의 또 다른 배경임도 부정할 수 없다.

2. 교육에서의 공공성이란?

학문적으로는 여러 정의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교육은 공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접근 기회의 문제이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공공성을 가지려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 교육 당사자의 최소한의 수학능력(해당 교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체적, 정서적, 지능적 여건)과 본인의 수학 의지(강제 교육이 아닌 한 본인의 수학 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가 있다면 다른 조건에 의해 교육의 기회가 불공정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 교육적 추구 내용의 문제이다

이는 해당 교육 기관이 추구하는 교육의 지향과 내용, 그 결과 등이 공공의 이익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정관이나 운영 목표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물이 공공적 요구와 공통의 미래를 선택한 의지로 지향하고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교육 이념이나 목적 어디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학습활동을 진행한다는 문구는 없겠지만 실제로 공교육의 지향은 경쟁에서 승리하여 상대를 제치고 좋은 대학, 사회적 성공을 이루도록 부추기고 있으므로 영리 학원과 다르지 않은 사교육의 성격을 담고 있다. 교육이 공공적 성격을 띠려면 그 교육의 내용이나 목적이 반드시 공익적이어야 한다.

3)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다

학생(학교)숫자나 법적구분에 관계없이 사회인의 다수가 해당 교육 기관이 존재할 필요와 의의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공공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참여 기회가 열려 있고 그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라 하여도 다수가 관심을 갖기 어렵거나 그러할 필요가 없는 교육적 콘텐츠가 있다면 그러한 교육은 굳이 공공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만약 교육에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국가는 그러한 교육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에서 국가의 개입은 통치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기회균등의 강제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만 유의미하다.)

이런 관점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이러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3.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

현재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공교육에 비해 그 내용적 공공성이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1) 접근 기회에서의 진입 장벽

이 점은 공공성 확보에서 일부 도시형 대안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갖는 어려움일 것이다. 아마 이런 고민 때문에 특히 기숙형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공공적 교육이라는 사회적 평가를 받기 위해 법제화를 통한 재정 지원이 더욱 절실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대안학교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막대한 운영비의 조달 과정에서 수혜자의 부담금 외에 다른 외부(국가를 포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거나 대안학교들이 아예 외부 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경제적 진입장벽 제한으로 인해 자칫 사회로부터 “그들만의 리그”로 오인 받기도 하는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진입 장벽을 확연히 낮추고 그 이후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비용 부족 상황에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는 순서로 일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선 자금 확보, 후 진입장벽 완화의 방식으로는 이미 익숙해진 집단의 타성을 넘어서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공공적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집단의 사회적 부채의식으로 남게 될 것이다.

2) 교육적 추구 내용에서 전문성 확보의 문제

대안학교의 교육적 지향과 내용의 공공성은 이미 언급한 대로이다. 대안학교들은 대체로 지속가능한 가치와 공존,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오랜 시간 현장에서 학교를 운영해 온 필자의 견해로는(이는 물론 학교마다 상의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러한 공공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의 실제에서는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대안적 가치를 통해 양성된 교사의 수가 부족함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대안학교 교사들의 업무 여건상 재교육 및 교수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에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간의 품앗이로 비용을 충당하더라도 해당 관련교과 교사들의 교과목별 교육과정 연구모임, 대안교육의 철학적 가치를 녹여낸 각 과목 교재 개발, 학교별 출판 작업, 교사의 기능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우리에게 맞는 대안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확산 작업

교육 정책 담당자들과 일선 교사, 학부모들의 다수는 진정 어려운 “언,수,외,탐 사지선다형 문제”를 열심히 잘 풀면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의 길이 열리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즉, 대안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특수 상황에 있는 소수자의 바람일 뿐인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반수가 넘을지 아닐지는 심증뿐이어서 확언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다수는 이미 제도교육에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2010년 교육현장에 작은 파장을 불러왔던 대학 자퇴선언문의 당사자인 김예슬이 ‘이미 어른들은 그 무한의 경주트랙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교육정책 담당자들도 ‘사실 그렇게 해 봐야 너희들 중 다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바꿀 수 없으니 그냥 거기서 견뎌’라는 체념과 ‘그래도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더 두렵지 않니?’라는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서, 이미 미래에 대한 지향과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이 사회에서 신념을 가지고 공교육을 사수하려는 다수의 교육자와 교육수혜자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치적 이해와 절차의 복잡성을 두려워하는 소수의 정치가, 교육관료 등을 상대로 법제화(공공성 확보)의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프레임(프로세스)에 갇히다 보니 법률적 전문성에서 열등감을 느끼고(학부모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oo법 o조 o항의 문제점을 법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복잡한 이야기의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시키는 일이 버겁지 않았던가?), 마치 우리의 교육적 지향이 사회적 인식 속에서 소수의 입장일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적 지향은 선하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우리가 보다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층 더 즐겁고 경쾌하게 진행해나갔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덧붙이고 싶다.

4. 공공성 확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해볼 수 있는 일들

1) 가칭 민간위탁형 공공적 대안학교(대안교육시설) 시범운영사업 제안-교육부

사업형태	민간 공모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사업주체	교육부
사업운영 실무	민, 학, 관 운영협의체(50%는 대안학교 10년 이상 유경험자)
공모방법	교육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 심의
선정기준	- 모집대상의 접근기회 측면에서의 공공성 - 제시한 교육과정 내용 및 지향의 공공성 - 지원기관의 대안교육 경험치 및 운영성과
지원방식	기존 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운영주체가 새롭게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임. (교사의 선정, 학생 모집, 학교의 하드웨어 구성 등을 A~Z 까지) 컨소시엄 형태일 수도 있고 이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단일 기관이 학교를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지원 내역	임대보증금(종료 후 상환, 필요시, 지원금 총액에서 제외) 및 임대료, 기본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교육사업비 등 연간 5억원 내외(운영기관에서 별도 교육비 징수가능, 단 공교육 고등과정 비용 범위 내)
지원 규모	4개 학교 내외×5억 원=약 20억 원/연간×3년 정도 (임대 보증금-상환 조건, 제외)
소요 자원	교육부 특교금 및 법령개정 없이도 임시로 지급할 수 있는 부처 자체예산 검토(프로그램 사업비, 예비비 등)
사업 모니터링	운영협의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진행(협의사업계획 준수 및 예산 투명성 관리 감독)
사업 평가	모집대상의 공정성, 교육 운영 내용의 적합성, 학생 성취도(별도 성취결과 측정 지표 필요), 학생, 교사, 학부모 만족도 변화,
기타	진행과정을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공개(언론, 방송 기획물, SNS 등...) 세부 사항은 실현될 시 추가 논의

→ 이 사업은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국가의 지원금과 민간 대안교육기관의 노하우가 결합하여 어떤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는 동시에, 이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 평가에 민, 학, 관이 함께 참여하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지원이 공교육에 비해 예산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실질적인 교육성고가 국가가 원하는 표준 학력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교사 자격증의 유무가 실질적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 제도화의 과정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실제 교육과정에서 직접 관찰, 평가됨으로서

대안교육의 공공성 문제 및 제도화 방안에 매우 자세한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책 확정을 위한 3년간의 모의실험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공교육의 일방적 방어태세를 완화하고 선의의 민간 교육주체와 즐거운 교육 경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일상을 전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

대안학교(교육)에 대한 social marketing의 일환으로 대안교육 가치의 정당성 및 제도 교육과의 지향적, 내용적 차이점 등을 부각한 SNS용 콘텐츠(청소년용, 교사용)를 제작(시리즈물이면 좋겠다)하여 청소년들과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 학부모 등이 자연스럽게 대안교육에 대한 긍정적 이해에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도를 해보았으면 한다. 이는 대안학교의 홍보나 학생 모집의 유용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교육이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 어떤 교육적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교육행위와 수혜의 당사자인 교사와 청소년들에게 직접 알림으로서 보는 사람들 스스로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대해 상상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청소년들의 자체 캠페인, 가칭 “학교를 바꾸자” 기획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문제를 진단하고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온라인상에 만들고 이들이 스스로 제도 교육의 모순(학교폭력을 조장하는 학교의 문화, 경쟁으로 인해 멀어지는 교우관계, 입시부담이나 따돌림으로 자살하는 청소년들 문제, 억압적인 교육환경, 획일적인 입시교육 등)에 대해 상호 해결 방안과 사회에 대한 요청 사항을 나눌 수 있도록 해보았으면 한다. 이러한 아이들의 생각이 일선 교육정책 담당자야 학교 운영자들에게 연결 될 수 있는 물리적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청소년들의 occupy school)

4)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래학교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그에 맞는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미 현재의 교육제도는 아이들의 미래를 대비하지 못할 것임이 자명해졌다. 당사자인 아이들이 원하는(그들의 정서와 속도에 맞는)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교육의 공공성의 문제는 사회의 진행 방향에 유용한 콘텐츠를

교육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희망하는 아이들을 선발하여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 그들이 설계하는 학교의 모습을 직접 구현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학교의 모습에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청, 민, 관, 학이 합동으로 “미래학교 포럼” 등을 구상하여 미래 교육(학교)의 공공적 가치를 선언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하다.

5. 미인가 대안학교의 제도화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1) 진입의 자유, 결과의 책임

이상적인 생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대안학교 관련 조항이 법제화되어 제도 안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사회가 합의한 일종의 최소 기준(학비 상한-이 부분은 사회적 배려자 비율과 연동하여 기준 마련, 특정 종교나 정치 편향 제외 등)을 만들어 이 부분을 충족하면 자유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진입 시 학교의 운영철학과 교육과정, 기타 운영계획들을 제출받아 심의하고(반사회적 내용에 대한 필터링) 학교 평가 시에는 자체적으로 제출한 교육 및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행여부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검증하여 결과의 책임을 엄중히 요구해야한다고 본다. 대안교육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과 교과목, 교사 자격증 등 제도교육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준들은 마땅히 초기 진입 시 심의 기준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2) 대학 선발에서의 차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대안학교의 교육이 입시교육을 지향하고 있지 않고 평가 방식들도 제도 교육과 매우 상이하여 현행 대학 선발 구조에서, 제도 교육과 학생부 성적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학생부 성적을 제외한 다른 면에서는, 대안학교 졸업자에게 차별적인 방식은 제도적으로 방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안 학교가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경우 대안학교 특별전형은 오히려 대안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관문을 좁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 모든 지원 자격에서

대안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제도교육 졸업자들과 공평하게 입학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3) 대안학교의 법제화 과정에서 재정지원이 불가할 경우 교육 바우처 지급

대안학교가 법제화되어 학력이 인정된다 하여도 만약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현재의 미인가 학교들의 재정구조 상 접근기회의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안학교가 그 내용에 걸맞는 공공성을 잃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교육기본권 차원에서 공교육의 1인당 투입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대안학교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교육의 공공성이 유지되고 학교의 재정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맺으며

제도화를 통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공공성 획득은 긴 시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국가의 교육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 수혜자들과 학부모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안교육은 그 본질 상 태동기부터 공교육 또는 교육 당국과는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제도 밖으로 가출한 교육이 국가의 입장에서 달가울 수 있었겠는가. 20년 가까운 세월이 경과한 지금 교육 당국과 관련 종사자, 연구자들이 미인가 상태에 있는 대안학교를 제도 안으로 편입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안교육 진영의 그간 성과들이 이를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을 터이지만 교육 당국의 시대 인식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고 있음이 분명하다. 대안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힘의 논리나 정치 논리로 쟁취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매우 중차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그 근간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공교육, 사교육, 대안교육을 모두 포괄하여)은 지속가능한 우리들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우리 교육의 종사자들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무엇을 걸고 있는가? 우리의 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법제화 이전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이 사회적 정의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려 한다면 반드시 공공적 가치와 공익적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는 눈앞의 밥그릇이나 투표용지 몇 장과 바꾸기에는 너무 크고 소중한 가치이다.
아이들의 불행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모두 각성하고 분발해야 할 일이다.

※ 참고-미인가 대안학교 현황

항 목	도시형 중등	전원형 중등	초등	위탁형 현장	합 계
현장 수	약 25개	약 15개	약 30개	약 50개	약 120개

○ 자료 출처 : 대안교육 연대

- 종교계 대안학교를 포함하면 약 170~180개, 학생 수 약 22,000여명 정도로 추정
- 여기서 위탁형 현장의 경우 학력인정 프로세스 안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 자체가 정식 인가된 학교는 아니지만 미인가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토론문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오 승 근 (명지전문대학 교수)

황 준 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조 상 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김 희 옥 (하자작업장학교 교장)

이 종 태 (곡성 한울고등학교 교장)

신 순 갑 (스스로넷 교장)

토 론 문

오 승 근(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1.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전자는 정규학교와는 다른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후자는 종래 학교교육의 방향과는 다른 교육적 가치와 교육 방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김성기 교수께서 발표문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부터 혼란스럽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대안학교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대안학교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안학교 유형으로 특성화학교, 각종학교 등 학력인정 학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안학교라는 용어는 대표적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후자의 대안교육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으로 현재의 공교육 체계와는 상이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안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 일종의 대안을 추구한다는 대안교육이 강조되는 것이 적절하다. 김성기 교수님은 용어를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통일하자고 주장한다. 대안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용어 사용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용어 사용에 동의한다.

염병훈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논의점이 생겼다. 염병훈 선생님께서는 대안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현행 학교교육 제도의 많은 폐해를 직접 목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대안학교를 운영하실 터이다. 그런 점에서 염 선생님께서 현행 공교육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경쟁·비교해보자고 제안하신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제도권과 비제도권 교육의 성취도와 만족도 등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 즉, 가칭 민간위탁형 공공적 대안학교 운영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셨다. 이 제안이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안교육을 지향하는 분들은 물론 정책입안자들도 대안교육

의 가시적 효과를 얻어내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양화된 지표로도 대안교육에 투여하는 것이 때로는 향후 국가 사회적으로 문제 청소년에게 투여되는 각종 손실 비용에 비하여 훨씬 더 나은 투자라는 방식(최상근 외, 2010)으로 대안교육에 국가 사회적 지원을 합리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토론자로서 미인가 대안교육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염병훈 선생님의 글 곳곳에서도 현행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적 궁핍과 여건 개선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의 공교육 체계를 못마땅해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애쓰시는 점도 알고 있다. 더욱이 뜻하시는 이상적 대안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적 지원이 필요하고 교사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과 대비되어 대안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교육의 효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현행 경쟁중심교육으로 치달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교육효과에 대해 비교해 보는 절차를 갖자는 염 선생님의 제안에 대해 그저 황망할 뿐이다.

공립학교도 대안학교도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각각의 대안교육일 뿐이다. 그리고 교육효과에 기초한 비교는 부적합하다. 교육이 수월성과 평등성 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느냐, 교육에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교육효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대안교육의 초점은 현행 정규학교 또는 공교육 문제로 인한 손실 즉 학업중단을 하는 청소년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즉, 한 명의 아이들도 최소한의 돌봄과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점에 있어서 토론자는 김성기 교수님의 의견과 같이 한다. 대안이라는 것이 곧 정답은 아니듯 다양한 여러 개의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대안교육의 발전방안

개인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 세미나의 토론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대안교육을 공교육 체계 내에서 민간교육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소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에 대한 학력인정 요건 완화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의 학력인정 여부는 단지 학력인정 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학력인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공통 기본과정의 이수(국어, 사회과)와 대안학교 승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며, 교육내용 요건을 맞추는 것도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학력인정 다양화 제도 신설 요건(2011. 8. 26 교육부 학력인정 다양화를 위한 안내 자료)에는 미인정 대안학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개인 학습자가 갖고 있는 대안학교에서의 경험학습을 관련 전문가의 평가방식을 통해 학력인정여부를 결정 받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안교육기관 교원연수 강화 및 가칭 대안교육연수센터 설립

염병훈 선생님이 발표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안학교 교사들의 업무여건상 재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이 학교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개별 대안학교 또는 지원센터 차원에서 길잡이교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양적, 질적 측면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명제는 대안교육에도 오롯이 적용된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가칭 대안교육연수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지자체별로도 관내 대안교육시설과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센터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기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역센터의 경우 예컨대,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원 연수기능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현행 미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적 지원은 절박한 상태이다. 국가와 민간에서 일부 시행된 프로그램 단위의 심사를 통한 대안교육 지원사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맹영임·김민, 2008). 물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정규적으로 공식화하는 것도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대안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건비가 제공되는 것이다. 김성기 교수께서 발표문에서 적시한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령기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면 최소학생 인원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공시설을 활용한 대안학교 운영 확대

대안교육기관이 미인가로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안교육의 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의 교육철학도 있지만 일부는 대안학교로 등록할 만큼 시설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탓도 있다. 시설 요건 상 교사 및 옥외체육장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학급당 교사 배치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수련관,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일부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은 설치 기준에 적합한 교사 뿐 아니라 수영장, 체육관, 강당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목적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비교적 청소년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낮 시간에 유희공간 확보가 일부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안학교를 유지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서울시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내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다섯째,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 단위 협력 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대안교육 발전방안은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대책은 국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단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 사례로 토론자가 2011년 노원구 학업중단 예방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 사례를 서울교육에 기고한 바 있다(오승근, 2013). 이 사례의 요지는 한 지자체가 지역 내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관내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아직 그 예방효과를 산출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지자체와 관할교육청, 그리고 지역 내 관련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대안교육 발전방안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피력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대안교육은 다양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안교육을 말하면서 다른 대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안교육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인정함으로써 한 명의 청소년도 낙오되지 않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대안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1). 학력인정 다양화안내자료(8. 26). (<http://www.moe.go.kr/web/1210/>)
- 맹영임 · 김민(20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활성화 방안연구. 연구보고 08 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승근(2013).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과 지원 방안. 서울교육, 210 봄호, 40-48.

토 론 문

황 준 성(한국교육개발원)

- 염병훈선생님께서 애둘러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와 관련된 논의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님. 이와 같이 대안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님. 이는 대안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이미 우리 사회에 상당 정도 정착되었고,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대안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임.
 - 그런데 본 토론자는 이와 관련하여 한 마디를 추가하고 싶음. 우리가 ‘대안교육(代案教育, alternative education)’이라 할 때, 그 의미는 기존 공교육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으로 그 본질상 주류일 수 없음. 대안교육의 한 모습이 그 국가·사회의 주류 교육이 되었을 때, 그 교육은 더 이상 대안교육일 수 없는 것임. 즉, 기존 틀의 변화를 추구하는 아직은 소수의 교육활동이 ‘대안’교육인 것임. 아울러 그 ‘대안’은 가치와 방법, 내용적 측면에서 열려있는 것이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진술은 지금까지 대안교육 운동이 우리 공교육에 준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안교육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가 상당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임. 아울러 지금의 대안교육기관 법제화 과정에서 일부 보여지는 조급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임.
- 지난 18대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대안교육기관 법제화 및 지원”과 관련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음. 특히, 이번에는 여와 야가 모두 대안교육기관 합법화 및 지원과 관련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바, 입법 실현의 기대를 복돋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임.¹⁾
 - 나름 교육법 전문가라고 하는 본 토론자가 보기에 현재 발의된 법률안들이 그대로 통과되기에는

1) 김세연 의원이 2012.9.4.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과 김춘진 의원이 2012.9.18. 대표 발의한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칫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음. 법안들이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자하기에 쟁점사항이 많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 국민 또는 국회의원 다수를 설득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이번 법제화는 지금과 같이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안교육기관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그것은 현재 법외 기관인 미(비)인가 대안교육시설 그리고 이곳을 배움의 터로 삼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법적 방치 또는 불법적 상태를 청산하여 주는 것이라고 봄. 재정적 지원 및 학력인정 문제는 차후의 문제일 수 있음.
 - 실제, 염병훈선생님께서 제안한 “가칭 민간위탁형 공공적 대안학교 시범운영사업”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현재의 미(비)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의 법적 지위가 최소한 불법 또는 법외 단체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임.
- 한편, 대안교육은 그 존재 자체로서 우리의 교육 현실에 있어서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동인이 되어왔음. 그러면서 최근에 공교육과의 접촉을 늘려가면서 대안교육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특히, 위탁형 대안교육제도가 그러함. 김성기교수의 의견과 같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대안교육이 가장 필요한 자들은 “학업중단자 또는 학업중단예정자”들일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고유한 대안교육의 이념을 지켜나가는 활동과 함께 위탁형 대안교육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임.
 - 사실, 공교육과 대안교육 상호 간의 타협과 연계의 산물로서 등장한 것이 위탁형 대안교육제도임. 즉, 위탁형 대안교육은 탈산업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적 상황과 이에서 배태된 이념들의 접점에서 공교육과 대안교육 간의 보완과 연계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제도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위탁형 대안교육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나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상황으로 인해 기존의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정규학교를 떠나지 않고 소속을 유지한 채로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을 선택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제도이기 때문임.²⁾

● 그런데, 김성기교수님의 발제문에 있어서 “법정 대안학교 폐지 및 특성화학교로 인가” 부분과

2) 김광수(2011).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의 제도적 위상”, 교육철학 44, p.10.

관련해서는 생각을 달리함을 밝힘.

-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들 중 다수가 기존 대안교육운동과 이질적인 것은 사실임. 그러나 전술한 것과 같이 대안학교에서 대안이라는 용어를 특정가치에 한정해서 봄 또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님.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들은 현재의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이를 대체하는 법안이 아님. 아울러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자칫 법적 안정성, 기대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염병훈선생님께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잘 정리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특히, 교육에 있어 ‘공공성’은 학습자의 학습권보호와 그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공공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공교육이라는 제도권 교육의 시각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요구하는 ‘교육환경·시설’, ‘교육과정·교과목’, ‘교원자격증’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수 있음. 즉, 무조건 받아들이 수 없다는, 진입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쟁점 사안별로 자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임.
- 일례로 쟁점 중 하나인 교원자격증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법제가 교원 임용에 있어 자격증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그 원칙은 준수하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대안학교 교원 자격증”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제도화 해달라는 것임. 또한, ‘교육과정’도 현행 법령상 최소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조치로 협의에 의한 최소한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겠다는 등의 협상적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임.

토 론 문

조 상 주(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먼저 대안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짚어주신 김성기 교수님과 염병훈 교장선생님께 대안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대안교육 발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대안 교육이 왜 필요한가? 하고 묻는다면 다들 공교육의 지향점이나 학생 지도의 한계, 교육의 획일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곤 합니다. 아마 공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업중단 사유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학교 부적응이 30.7%, 학습부진 23.0%, 가정문제 11.6%, 진로 적성 불일치 8.4%, 교우 관계 5.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져보면, 학생들은 거창한 이념적 고민이나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욕구 때문에 그만두기보다 주변 상황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공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유학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적 욕구의 스펙트럼은 정말 다양합니다. 학업, 직업, 취미, 인성, 즐거움 등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들을 다른 한편에서는 ‘위화감 조성’이니, ‘사회적인 계급적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반대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요리학교니, 음악학교, 댄스학교 같은 것들이 300개 정도 생겼다면, 그리하여 학생들이 획일화된 공부가 아닌,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대안교육이, 대안학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변신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환영하여야 하겠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생의 경우, 서울에서 한해 7천여 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유학과 질병을 제외한 실질 중단학생이 약 5천여 명. 이 학생들이 대부분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12년 통계에 의하면, 검정고시 합격자 중 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5,300여명이고, 재입학은 통계가 나오지도 않으며, 학업을 완전히 그만 두고 방황하는 학생도 있으니 수치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의 위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지원해 주어야 할까요?

표준교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 1명당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한 번 계산해 볼까요? 1천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가 있다면 총 소요 예산을 얼마나 될까요? 언뜻 계산하면 30학급에 교사 50명, 교직원 15명 정도이니 인건비는 평균 5천만 원 잡아서 32~3억 원, 학생들의 급식비나 각종 교육활동 지원 예산이 5~6억 원 된다면 40억이 안 되네요. 염병훈 교장선생님께서 한 개 학교 5억을 말씀하셨는데, 학생 수 100여명을 염두에 두고 계산하셨다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칭)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결국 공교육과 대안교육은 풍선효과라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큼니다. 공교육에 지원해야 할 예산을 줄여서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여야 하고, 중국에는 더욱더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 희망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학생, 다문화가정·탈북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고, 기관에 대한 지원 역시, 수업료를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시도조례수준을 따르거나 면제하는 기관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김성기 교수님께서 제시한 ‘대안학교’의 용어 문제는 통일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중인 법률안이 통과되고 각종학교 설립 근거가 없어진다면, 대안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인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논의로 돌아와 봅시다. 서울에는 교육부가 제시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인가된 대안학교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공립 대안학교인 서울다솜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 학교가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후원이나 재단 전입금,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인가된 대안학교의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시도로 내려주는 보통교부금에 대안학교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도 조례 수준 이상의 학생 부담금을 징수하는 대안학교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급 규모나 위탁학생 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5천만 원에서 2억여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건물 임대료와 전담인력 인건비는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는 1~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들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학생들에게 별도의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에 재정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으며, 각종 사업 공모에 나서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와 교육부가 지원해주는 약간의 지원금(2012년 교과부 지원금 : 17개 기관 292백만 원), 그리고 학생 부담금, 재단 전입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다문화·탈북학생, 저소득계층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시설도 있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과다하여 학습자들로부터 부담금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지만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 반환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칭)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운용이 좀 더 투명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서울시교육청은 대안학교에 대한 장학과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 학업중단학생

교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있다면 지정 해제나, 설립 인가 취소 등의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대안교육연대나 기독교대안교육연맹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선’을 향해 보조를 맞추고 있으나, 소극적 분파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정녕 학교밖청소년학습자를 위한다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미인가 시설이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얼마나 많은 기관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이념과 종교를 떠나 학생들을 위한 신성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의 현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강화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안교육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지원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편향성이나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시설에는 보편적 가치가 용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수용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취학 연령의 학생들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의무교육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안교육의 법제화 내지는 공공성 확보라고 봅니다. 학교밖청소년도 엄연히 학습자입니다. 대안교육도 공교육의 한 축을 떠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합법화의 길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서로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당국과 협력하며 법 테두리 내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냐고요?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토 론 문

김 희 옥(하자작업장학교 교장)

오늘의 발표문 두 편을 읽으면서 최근 몇 년간 대안교육현장들 내부에서 지속해왔던 ‘정명’(正名)의 노력이 청소년과 청소년교육을 염려하는 분들 사이에 좀더 공감을 일으켰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안교육현장의 정명운동은, 교육은 사유화될 수 없고, 도구화될 수 없으며, 평등한 기회의 권리와 공공의 행복을 지향하는 큰 비전 속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명운동은 대안교육현장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소명을 헤아려보는 운동이었고, 아무 것도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 불안정한 위기의 시대로부터의 교육적 전환을 기획하는 시민적 책무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교수님의 글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었던 것은, 대안교육은 어디로 가야할까 라는 문제를 두고, 대안교육이 왜 필요한냐는 것은 일반학교도 대안학교도 다니지 않는 ‘학업중단자’를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학업중단자’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위탁교육기관의 수준과 규모로는 크게 부족하므로 교육현장으로서의 정비와 확대가 필요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은 물론, ‘학업중단자’들에게도 ‘행복한 교육을 받을 기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성기교수님께서서는 현재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공교육의 전통적 교육방식을 거부”하면서 소규모의 사례에 집중하여 이 ‘학업중단자’를 제대로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교수님께서 염려하시는 ‘학업중단자’들에 대한 고민은 대안교육현장의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교육과 성장에 집중하느라 결과적으로 ‘거부’하게 되었던 것은 ‘전통적 교육방식’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교육’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입시중심교육, 승자독식, 무한경쟁의 교육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방식은 끊임없이 ‘학업중단자’를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의 제도안에 있는 학생들 또한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위탁교육기관의 제도적 확충을 당장 실행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없습니다. 미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이미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때입니다.

최근에 518을 지나면서 미디어에서 소위 ‘일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주변의 선생님들과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 ‘일베’도 문제겠지만, 일베이든 아니든 청소년들이 그 언어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518 관련된 이슈가 문제가 되기 전에, 일베사이트에서 아주 유명했던 게시물 하나를 복사해왔습니다.

← → ↺ www.ilbe.com/105788791 ☆ IP2

www.jewde.com www.selpakorea.co.kr 스폰서링크

답답 게시판

몇일후에 6살 조선족 여자아이를 강간할계획이다. 질문받는다.. 익명_47c3c9

http://www.ilbe.com/105788791 25 2012.07.09 22:29:17

7월 13일 집앞에 거주하는 불법체류로 판단되는 6살 여자아이를 강간할계획이다.

사실 집앞의 개념이라기보다 외국노동자들이 사는 빌딩같은게 속식개념으로 있는데

집에서 약 30분거리지 ㅋㅋ 물론 일부러 선택했지만..

거기서 학교도 안가고 집에서 빈둥빈둥 혼자있는 애가 있다. 약 2개월간 그 가족 집에도 몇번 창문쪽 파이프난간타고 들어가보기도하고

애미는 가족공장에서 미싱질하고있는데 새벽2시쯤에야 들어오고 애비는 몇달전까지만해도 근처 횡집에서 서빙알바하다가

삼쪽으로 배타러 갔더라구 ㅇㅇ 암튼

맘에안들면 눈을가리고 쇠파형이로 먹을 끊어놓을 생각을 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받는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 게시글을 보여드린 것은 자극적인 게시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글의 언어들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유로 그러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일베들의 에너지 때문에 기가 죽다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얼마전 “대한민국 청년 5명중 1명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이다”는 다소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13 세계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중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인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9.2%였다고 합니다. 다섯명 중에 한 사람은 니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다섯아이 중의 하나가 니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안교육현장의 ‘정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큰 기대와 포부로 시작하였을 것인데, 결국 이 ‘실력’ 문제에서 난감함을 공유하고 부족함을 시인하는 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십오년여의 경험이 무위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안교육현장에는 ‘학생 스스로의 학습동기와 성장의 동력’을 끌어내는 데 실력이 꽤나 높은 고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탁교육시설들이 대안교육현장이나 대안교육 시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면 아마도 그 고수들의 협력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병훈선생님의 여러 가지 공공화 제안들은 그러한 협력과 조언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지금은 단도직입적인 처방도 좋은 아이디어도 시설의 확충이나 예산의 확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못하겠다’ 그럴 실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콧대 높게 뭔가 해보겠다더니 좀 더 보편적이고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십오년여간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해볼만한 것들은 많이 해봤으니까요. 이제 정말 문제와 마주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왜소한지 이제 서로 손잡고 일단은 좀 더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 속수무책이 되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 론 문

이 종 태(전남 곡성 한울고등학교 교장)

1. 대안교육의 의미 혼란

1) 의미 혼란의 양상과 원인

● 대안교육 개념을 이해하는 세 가지 수준

- 기존 교육 방식이나 내용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시도들(예: 열린교육, 부적응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 기존의 교육철학에 공감하지 못하여 자신의 대안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식을 추구하는 것들(예: 섬머힐, 발도르프학교, 변산 공동체학교 등 일부 비인가 대안학교들, 기독교대안학교 등)
- 이종태의 이해 방식: 20세기 말에 직면한 근대교육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의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다수의 비인가 대안학교들/학습자 중심교육, 생태주의와 공동체성, 영성 등의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가치 추구)

● 의미 혼란의 양상

- 개념 이해 수준의 혼동
- ‘대안학교’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동
- 법적 용어로서의 ‘대안학교’와 일반적 보통명사로서의 대안학교 혼동
(법적으로 ‘대안학교’이지만 대안교육의 가치나 철학과 무관한 학교들을 대안학교로 부르는 것이 의미 혼란의 극치임.)

● 의미 혼란의 원인

- ‘대안’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난해성
- 정책 당국 및 교사 집단의 학교와 교육에 대한 고착적 인식(부적응 중심)
- 학자 및 연구자들의 게으름

2) 대안학교의 개념 지도(대안교육/대안학교)

● 학력 인정

- 특성화 중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1998부터)
- 각종학교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및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2005년 이후)
- 위탁 대안교육기관(교육청 내부 규정/2001년 서울시 대안교육종합센터 설립이 계기, 이후 타 시도교육청으로 확산/부적응 학생들의 단순 위탁 시설이나 Wee school, Wee Class 등은 위탁대안교육기관으로 보기 어려움.)

● 학력 비인정

- 비인가 대안학교
- 기독교 대안학교

※ 평생교육시설은 대안학교 범주에 넣기가 곤란함.

2. 국내 대안교육의 전개과정과 성과

1) 국내 대안교육의 전개 과정

- 한국형 대안교육의 전사(prehistory): 70년대 노동야학, 80년대 대안적 공부방
- 90년대 초 프로그램형 대안학교
- 특성화 중고(19998)
- 비인가 대안학교(1997년 간디청소년학교, 2001년 산어린이학교와 버리학교)
- 위탁대안교육기관(2001)

- 기독교대안학교(2000년대)
-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2005)

2) 대안교육의 성과

- 기존의 ‘학교’라는 고정 관념과 틀의 파괴 및 학습자 중심 교육의 구체적인 실체 구현
- 기존의 학교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적 경로 제공(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범위 확대)
- 교육적 가치 및 실천 방법의 다양성 확산(혁신학교)

3. 향후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과 공교육의 역할

1) 대안교육의 일반적인 발전 방향

- 법령 정비(특히 법적 ‘대안학교’라는 용어 폐지)
- 기존의 대안교육 기관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바우처 개념의 도입)
-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 전환(교육 내용 요소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도달 목표에 관한 기준)
- 네이스로 인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의 획일성 지양

2) 대안교육의 도전에 따른 공교육의 대응 방향

- 대안교육의 등장은 기존 공교육(혹은 학교교육 제도)의 한계 노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향
-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향: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근대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 탈피 및 학습자 위주의 교육 구현)
 - 지역 및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교육과정, 인사, 재정권 부여)
 - 학생 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 교원 제도 개편(양성, 임용, 승진, 전보)

3) 공교육 범주 내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

● 공립 대안학교(특성화중고)

- 설립 확대 여부는 검토의 여지
- 기 설립 학교들에 대한 철학과 운영 방향 정립: ‘부적응 학생의 처리’라는 편의주의적 발상 탈피, 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적극적 실험의 의미 ⇒ 미래지향적 모델학교로 육성하여 기존 사립 특성화 중고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
- 기존 국가 교육과정의 틀에 대한 예외적 지위 인정 및 교육과정 운영과 그 결과에 대한 과감한 자율성 허용
- 학교장과 교사의 임용 및 순환근무제 적용 예외
- 재정 지원 확대 - 부적응 학생들의 미래지향적 기회비용 경감 차원

● 각종학교 ‘대안학교’

- ‘통제 없는 사립학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실질적인 대안교육을 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유인책 마련
- 현재의 부적응 학생 위탁기관이나 Wee school 등을 대신할 수 있는 공교육 보완 기관으로 적극 활용(인천 해밀학교: 단, 이 경우 일반 교사들을 발령하기보다 대안교육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교사진으로 구성)

● 위탁 대안교육기관

- 기존 위탁기관들의 교육의 질에 대한 점검 및 평가 필요
- 양질의 교육을 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을 위탁 기관으로 적극 활용(행·재정적 지원)
- 서울시교육청의 ‘꿈타래 학교’와 같은 모델의 육성 및 확산

토 론 문

신 순 갑(스스로넷 도시형 대안학교 교장/산티교육공동체 이사)

김성기교수의 “대안교육 왜 필요한가”의 소주제에 김성기 교수는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물으면서 4만 명 이상의 학업중단자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학업중단의 이유가 자발적, 가사, 질병, 부적응, 품행 등의 내용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의 재 교육기회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본인의 관점은 “누가 대안교육을 선택하는가?”로 보고 싶다.

학업중단자 학생에 관하여는 분명 재교육과정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해 끝내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도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가정환경(방치된, 혹은 포기된)과 개인의 처지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육을 포기한 학업중단자 학생에게는 구분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학업중단자 학생이라고 일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대책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자한다.

대부분 대안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교육적 방식과는 차별적인 새로운 대안적교육을 찾아온 학생들과 품행, 학교폭력, 사회성 등의 문제가 있지만 교육을 포기하지 않은 학생과 부모들이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 도시형 대안학교나 전국의 인가, 비인가 대안학교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도시형 대안학교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있어 저 소득층 학생이 입학하기에 수월한 구조를 지녔지만, 대부분의 대안학교의 특성상, 제도권 학교와는 달리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학교입학과 재학의 필수적 요소이다.

물론 위탁형 대안학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위탁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권 학교의 졸업장을 받으며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안학교의 장점인 커리큘럼을 맘대로 구성하지 못하며 해당지역 교육청이 지정하는 과목과 시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본인의 경우에도 한때는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을 위탁형으로 운영하였으나 제도권 학교에서 위탁되어지는 학생들의 경우, 도저히 수업을 끌고 나갈 수가 없어 한 해 동안 지원되는 보조금 8000만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비인가 대안학교로 운영하게 되었다. 우리학교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학교에서 장애가 있어 수업을 받기 힘든 학생들과 도저히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학생, 비행정도가 아주 심한 학생 등 “소위 학교에서 포기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대안학교도 분명히 학교이다. 학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위탁형 대안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민간적 차원보다는 민간을 양성한 공공적 차원의 대안학교로 발전시켜 제도로써 좀 더 안정화시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기 교수의 대안학교와 현황에 대한 정리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귀중한 자료로 쓰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귀족형 국제학교에 가까운 법정 대안학교의 폐지에 동의하며 비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조속히 환원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설립하고 있는 공립대안학교 등의 설립에도 반대한다. 공립대안학교 하나를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백억이 들뿐 아니라 그 운영에 있어 초기 때에는 의식 있는 교사들이 참여하지만 차차 그렇고 그런 대안학교로 자리 잡아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가든 비인가든 학교의 학생은 최소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인이 선택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결국 이러한 지원의 외면은 대안교육을 선택한 일반가정의 또 다른 생활고로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염병훈 교장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배경과 취지 및 제안에 동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꾸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확보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역시 염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일반학생들의 대안학교 진입의 접근성 확보와 세 번째의 사회적의식의 공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두 번째의 교육적 추구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교육의 공공성확보는 현재 교육의 시장화정책과 무한경쟁체제의 경쟁교육 강화정책이 사교육시장과 혼재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공교육의 현실이다. 결국 교육의 지향과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상황에서 뚜렷하게 구분 짓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 본인은 이 부분에서 만큼은 미인가 대안교육기

관이 기존의 공교육 기관과 더불어 차별성 있게 갖고 가야 하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자칫 공공성 확보라는 명제 하에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운영자 모두에게 또 다른 일방적 강요가 뒤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아울러 제안에 대한 민간위탁형 대안학교운영은 참신하다고 생각하나 이 경우에도 결국 해당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있어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다. 또한 선발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시 엄청난 재앙적 수준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두 분의 발제를 통해 생각의 범위를 좀 더 압축해보자면 결국 “국가의 지원은 끌어내되 공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지향과 내용과는 현저히 다른 기존의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적 지향과 내용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견으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인 쇄 2013년 5월 22일

발 행 2013년 5월 23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